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참고자료 http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석유산업과 조영신과장(2110-4890), 여영섭사무관(2110-5452)

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유사석유 구입시 과태료처분

□ 앞으로 등록된 석유판매업소(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)가 아닌 곳, 즉, 길거리 등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* 등록된 석유판매업소 : 휘발유는 주유소, 경유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업소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는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에는 공급·판매자에 대한 단속외에도 사용자의 사용자제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,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12.30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*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6.

□ 그동안,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,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부과를 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다.

○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자동차와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